



# 2025년 4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25. 12. 18.(목) 17:00

◆ 장 소 : 법인사무국

사회복지법인 무일복지재단

해인

후고

인상

일일

인상

상상

인상

상상

# 《 회 순 》

- 성원보고 ..... 사무국 직원
- 개회 및 인사 ..... 대표이사
- 전차회의록 확인 ..... 사무국 직원
- 안건보고 ..... 사무국 직원
- 안건심의 ..... 대표이사
  
- 제1호 의안 2025년 법인 및 산하시설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2026년 법인 및 산하시설 최초예산(안), 사업계획서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법인 직원 인사이동의 건
- 제4호 의안 법인 인사위원회 구성의 건
- 제5호 의안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제6호 의안 대명사회복지관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의 건
  
- 폐회선언 ..... 대표이사

# 2025년 제4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25년 12월 18일(목) 17:00

2. 장 소 : 법안사무국

3. 참석이사 : 대표이사 이강혁, 이사 조희우, 권우돈, 곽병해, 박입근, 배상우  
불참이사 : 이사 정규성

## 4. 회의안건

가. 전차회의록 처리

나. 2025년 법인 및 산하시설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다. 2026년 법인 및 산하시설 최초예산(안), 사업계획서 승인의 건

라. 법인 직원 인사이동의 건

마. 법인 인사위원회 구성의 건

바.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 개정의 건

사. 대명사회복지관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의 건

## 5. 개회선언 및 성원보고

- 이준호 사회복지사의 사회로 2025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를 개회하다.
- 사회복지사가 총 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됨을 보고하자, 이강혁 대표이사는 이를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 이강혁 대표이사는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주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제4차 정기이사회 안건을 설명하면서 이사회를 시작하다.

## 6. 전차회의록 처리

○ 이강혁 대표이사

- 우선 전차회의록에 대해 심의 의결을 요구하며, 사회복지사에게 전차회의록을 낭독하게 하다.
- 사회복지사의 전차회의록에 대한 낭독이 끝나자, 대표이사는 전차회의록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다.

○ 곽병해 이사 : 전차회의록의 처리에 있어서 원안대로의 의결에 동의를 하다.

○ 배상우 이사 : 재청을 하다.

○ 이사전원 : 전차회의록에 대해 특별히 이의가 없다며, 동의를 하다.

○ 이강혁 대표이사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을 하자, 전차회의록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다.

7. 부의안 심의

가. 제1호 의안 : 2025년 법인 및 산하시설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이강혁 대표이사 : 기 제출된 자료와 같이 2025년 법인 및 산하시설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사회복지사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여, <표1>과 같이 상세히 설명을 하다.

<표1> 법인 및 산하시설 추경예산(안)

기관명	2025년 최초예산(A)	2025년 결산추경(B)	증감(B-A)	비고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	5,060,384,000	5,194,035,000	133,651,000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 (특별회계)	394,333,000	391,345,000	-2,988,000	

  

기관명	2025년 1차추경(A)	2025년 결산추경(B)	증감(B-A)	비고
무일복지재단	603,000,000	603,000,000	0	
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 (식사배달)	47,451,000	47,451,000	0	
참좋은기억학교	513,500,000	507,900,000	-5,600,000	
참좋은무일복지센터 (주간보호)	501,239,000	501,049,000	-190,000	
참좋은무일복지센터 (방문요양)	481,902,000	473,865,000	-8,037,000	
참좋은무일복지센터 (특별회계)	70,014,000	47,014,000	-23,000,000	
참좋은노인복지센터	338,600,000	204,685,000	-133,915,000	

  

기관명	2025년 2차추경(A)	2025년 결산추경(B)	증감(B-A)	비고
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 (재가일반)	307,591,000	316,391,000	8,800,000	
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 (맞춤돌봄)	1,098,903,000	1,098,903,000	0	
대명사회복지관	1,481,000,000	1,588,570,000	107,570,000	
참좋은지역아동센터	262,539,000	257,307,000	-5,232,000	
참좋은우리집	289,547,000	289,547,000	0	

- 이강혁 대표이사 : 법인 및 산하시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질의 해 줄 것을 말하다.

- 곽병해 이사 : 확정된 금액들에 대한 추경이 대부분이고, 입소자, 이용자의 변동으로 인한 증액이나 감액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원안대로의 승인에 동의한다고 말씀하다.

- 박입근 이사 : 곽병해 이사의 동의에 재청을 하다.

○ 이사전원 : 광병해 이사의 동의에 전원 찬성하다.

○ 이강혁 대표이사 : 2025년 법인 및 산하시설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나. 제2호 의안 : 2026년 법인 및 산하시설 최초예산(안), 사업계획서 승인의 건

○ 이강혁 대표이사 : 기 제출된 자료와 같이 2026년 법인 및 산하시설 최초예산(안),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회복지사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여, <표2>와 같이 상세히 설명을 하다.

<표2> 2026년 법인 및 산하시설 최초예산(안)

기관명	2025년 결산추경(A)	2026년 최초예산(B)	증감(B-A)	비고
무일복지재단	603,000,000	298,400,000	-304,600,000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	5,194,035,000	5,085,405,000	-108,630,000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 (특별회계)	391,345,000	395,370,000	4,025,000	
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 (재가일반)	316,391,000	295,198,000	-21,193,000	
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 (식사배달)	47,451,000	47,451,000	0	
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 (맞춤돌봄)	1,098,903,000	1,307,678,000	208,775,000	
참좋은기억학교	507,900,000	541,500,000	33,600,000	
참좋은무일복지센터 (주간보호)	501,049,000	486,505,000	-14,544,000	
참좋은무일복지센터 (방문요양)	473,865,000	470,720,000	-3,145,000	
참좋은무일복지센터 (특별회계)	47,014,000	72,020,000	25,006,000	
참좋은노인복지센터	204,685,000	304,000,000	99,315,000	
대명사회복지관	1,588,570,000	1,588,000,000	-570,000	
참좋은지역아동센터	257,307,000	251,153,000	-6,154,000	
참좋은우리집	289,547,000	299,300,000	9,753,000	

○ 이강혁 대표이사 : 2026년 법인 및 산하시설 최초예산(안), 사업계획서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질의해 줄 것을 말하다.

○ 박입근 이사 : 어려운 상황에서도 2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방문요양의 어르신들의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원안대로의 승인에 동의한다고 말하다.

- 광병해 이사 : 내년에도 사업확장에 힘써주시길 바라며 박입근 이사의 동의에 재청을 하다.
- 이사전원 : 박입근 이사의 동의에 전원 찬성하다.
- 이강혁 대표이사 : 참석하신 모든 이사의 찬성으로 2025년 법인 및 산하시설 추경예산(안) 승인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다. 제3호 의안 : 법인 직원 인사이동의 건

- 이강혁 대표이사 :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인사이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다.

<표3> 직원 인사이동

성명	현근무지	변경근무지 (인사이동일)	인사이동사유
김선애	무량수전 노인전문요양원	참좋은기억학교 (2026.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부담 완화로 업무 안정과 회복에 도움</li> <li>- 프로그램 중심 환경으로 난이도 완만해 적응 용이</li> <li>- 장기요양 경험을 프로그램 평가와 소통에 활용 가능</li> </ul>
황다영	참좋은재가 노인돌봄센터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 (2026.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 강점이 보호자 대응역량으로 바로 연결됨</li> <li>- 대면 경험이 풍부해 요양원 상담 흐름에 적합</li> <li>- 다양한 기관경험으로 시설 적응력 우수</li> </ul>
조준호	참좋은 기억학교	대명사회복지관 (2026.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역량 확장 필요한 성장 단계</li> <li>- 복지관은 다양한 업무 경험 제공</li> </ul>
김재엽	대명 사회복지관	참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 (2026.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관 기획력을 재가센터 운영에 즉시 적용</li> <li>- 문서, 행정역량으로 재가센터 체계 강화 가능</li> <li>- 재가센터 행정체계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도움</li> </ul>
이가희	참좋은 노인복지센터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 (2026.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근무 경험을 통한 요양원 이해도가 높음</li> <li>- 기록, 행정 이해도를 바탕으로 평가 대응력 강화</li> <li>- 참좋은노인복지센터 인건비 부담 완화</li> </ul>

- 이강혁 대표이사 : 시설별 필요능력과 직원들의 경력, 능력 등을 참고하여 논의한 결과 <표3>과 같이 결정을 되었음을 말하다.
- 배상우 이사 :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 및 능력 개발을 위해서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원안대로의 승인에 동의한다고 말하다.
- 곽병해 이사 : 직원들의 인사이동 후에도 빨리 적응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며 배상우 이사의 동의에 재청을 하다.
- 이사전원 : 배상우 이사의 동의에 전원 찬성하다.

○ 이강혁 대표이사 : 참석하신 모든 이사의 찬성으로 법인 직원 인사이동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라. 제4호 의안 : 법인 인사위원회 구성의 건

- 이강혁 대표이사 : 기 제출된 자료와 같이 법인 인사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사회복지사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여, <표4>와 같이 상세히 설명을 하다.

<표4> 사회복지법인 무일복지재단 제2인사위원회 규정

제6조(역할)

② 제2인사위원회는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9조(제2인사위원회 구성)

① 제2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며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2인사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1. 산하기관 기관장
2. 법인 대표이사가 임명한 대표 중간관리자
3. 법인 고유목적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인사위원을 외부인사 중에서 1명 이상을 임명해야 한다.

○ 제2인사위원회 구성 (총5명)

- 법인대표시설장 1명 / 내부인사
- 법인시설장 1명 / 내부인사 (대명사회복지관 관장 설찬수)
- 법인 대표이사가 임명한 대표 중간관리자 1명 / 내부인사
- 법인 고유목적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 외부인사 (달성군남부노인복지관 관장 김홍수)
- 최초임용예정 기관장 1명 / 내부인사

- 이강혁 대표이사 : 법인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질의해 줄 것을 말한다.
- 권우돈 이사 :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원안대로의 승인에 동의한다고 말한다.
- 광병해 이사 : 권우돈 이사의 동의에 재청을 하다.
- 이사전원 : 권우돈 이사의 동의에 전원 찬성하다.
- 이강혁 대표이사 : 참석하신 모든 이사의 찬성으로 법인 인사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마. 제5호 의안 :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이강혁 대표이사 : 기 제출된 자료와 같이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 개정에 대해 사회복지사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여, <표5>와 같이 상세히 설명을 하다.

<표5>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의 신규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	운영규정
제1부 조직 및 직제	조직 및 직제규정
제2부 인사규정	인사규정
제3부 복무규정	복무규정
제4부 임금규정	보수규정
제5부 예산·회계규정	예산회계규정
제6부 물품관리규정	물품관리규정
제7부 차량관리규정	차량관리규정
제8부 문서관리규정	행정업무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부 위임전결규정	위임전결규정
제10부 직원고충처리규정	직원고충처리규정
제11부 시설관리규정	시설관리규정
제12부 입소자관리규정	입소자관리규정
제13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운영위원회규정
제14부 종사자윤리지침	종사자윤리지침
제15부 특별회계 운영규정	특별회계운영규정
	여비규정

- 이강혁 대표이사 : 무일복지재단 산하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의 운영규정 개정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질의해 줄 것을 말한다.
- 배상우 이사 : 변화된 법령과 장기요양 고시 등에 맞춰서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원안대로의 승인에 동의한다고 말씀하다.
- 곽병해 이사 : 배상우 이사의 동의에 재청을 하다.
- 이사전원 : 배상우 이사의 동의에 전원 찬성하다.
- 이강혁 대표이사 : 참석하신 모든 이사의 찬성으로 무일복지재단 산하 대명사회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바. 제6호 의안 : 대명사회복지관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의 건

- 이강혁 대표이사 : 기 제출된 자료와 같이 무일복지재단 산하 대명사회복지관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에 대해 사회복지사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여, <표6>, <표7>과 같이 상세히 설명을 하다.

<표6> 대명사회복지관 운영규정의 신규대조표

구분	현행	변경 후	비고	
부 무 규 정	제30조(병가)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장은 연 60일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일이 5일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생략)	제30조(병가)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장은 연 60일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일이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수정)	* 취 업 규 칙 개 정	
	[별표1]	[별표1]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자녀		2
	출산	본인		90
		배우자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자녀	2		
출산	본인	90		
	배우자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1			

<표7> 대명사회복지관 취업규칙의 신규대조표

구분	현행	변경 후	비고				
제2절 휴일· 휴가	제47조(경조휴가) [별표1]	제47조(경조휴가) [별표1]	* 취업 규칙 개정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결혼	본인	7
		자녀		2		자녀	2
	휴가, 출산, 사별	본인 및 배우자		1	출산	본인	90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배우자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1			
제3절 휴직· 복직	제63조(임금체계) 2. 연봉제 종사원에게 지급되는 연봉 총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삭제)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3. 월급제 및 시급제 종사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기본급, 법정 제수당...(삭제) 6. 동 조의 임금의 구성은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에 서 발표...(수정)	제63조(임금체계) 2.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 명절수당, 가족수당, 제 수당 등으로 한다. 3. 제2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 본급 및 고정지급수당으로 하고 명절수당을 포함하 여 책정한다. 6. 동 조의 임금의 구성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 표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고 할 수 있다.					
	제64조(임금의 지급방법) (수정) 4. (신설)	제64조(임금의 지급일 및 계산) 4.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5조(임금지급방법) 3. (신설)	제65조(임금지급방법) 3.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전자문서 포함)를 서면 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이강혁 대표이사 : 무일복지재단 산하 대명사회복지관의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질의해 줄 것을 말한다.

○ 박입근 이사 : 필요에 의한 변경으로 보이며, 원안대로의 승인에 동의한다고  
말씀하다.

○ 곽병해 이사 : 박입근 이사의 동의에 재청을 하다.

○ 이사전원 : 박입근 이사의 동의에 전원 찬성하다.

○ 이강혁 대표이사 : 참석하신 모든 이사의 찬성으로 무일복지재단 산하 대명사회복지관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8. 폐회

○ 이강혁 대표이사 : 기타 토의사항이 없는지 참석 이사들에게 묻고, 없음을 확인 후 폐회를 선언하다(17:50).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무일복지재단의 2025년 4차 정기이사회에서 2025년 법인 및 산하시설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2026년 법인 및 산하시설 최초예산(안), 사업계획서 승인의 건, 법인 직원 인사이동의 건, 법인 인사위원회 구성의 건,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 개정의 건, 대명사회복지관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의 건이 결의되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하다.

2025년 12월 18일

대표이사	이 강 혁 (인)	이사	조 희 우 (인)
이사	권 우 돈 (인)	이사	곽 병 해 (인)
이사	박 입 근 (인)	이사	배 상 우 (인)
감사	전 선 익 (인)	감사	이 진 복 (인)